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상 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	
	대표자	(한글) (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건축허가번호 (가설건축물만 해당함)			
이미 취득한 사업	등록한 다른 시설공사업	다른 업종의 등록·신고번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공사협회 귀중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라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말하며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시로 정한 서류) 1부 2. 기업진단보고서 1부 3.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발급번호 포함) 1부 4.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1부 5.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1부 6.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나.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부등본 (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건축허가서(「건축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정보통신기술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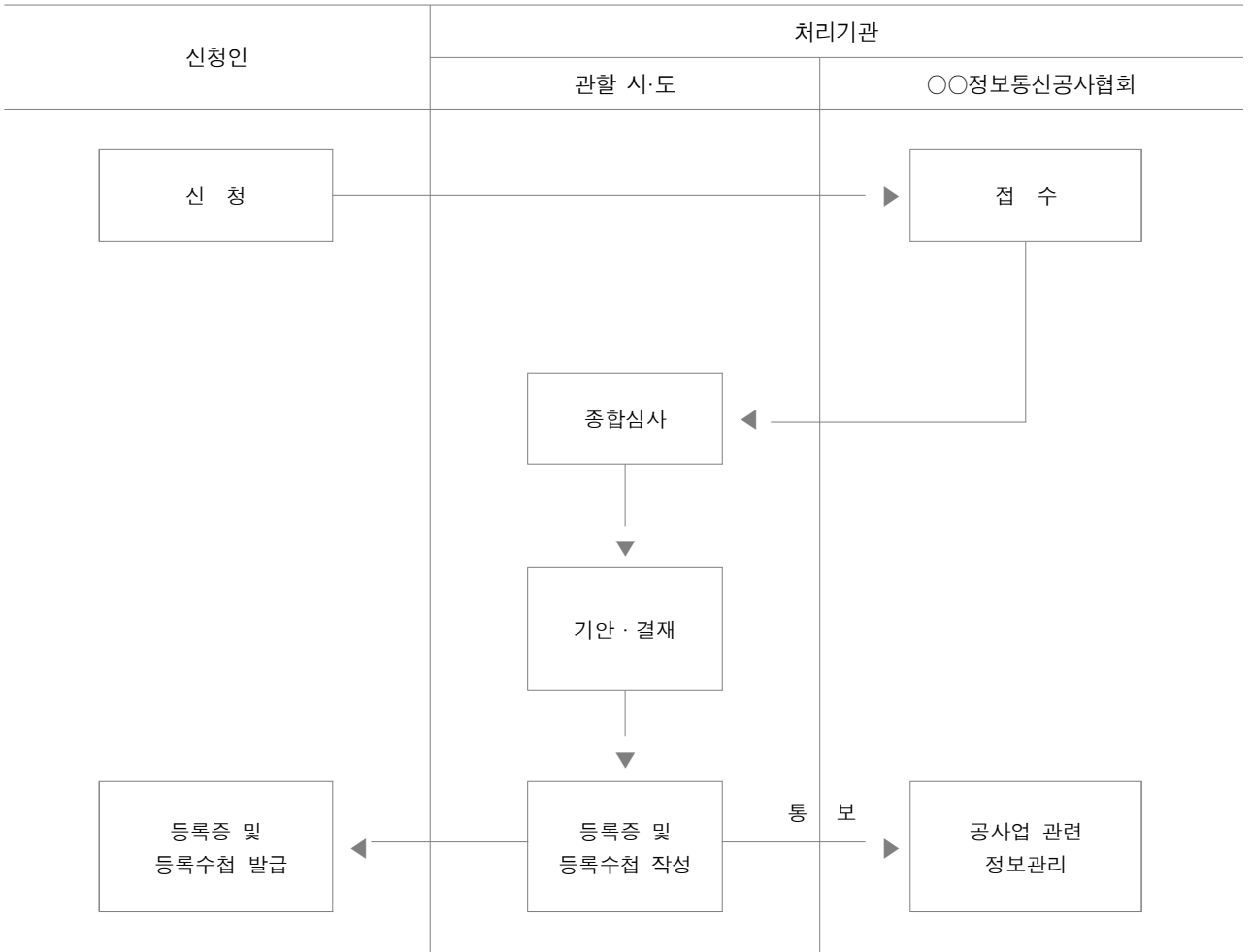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 제4호 및 제5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 호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상 호

대 표 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등록연월일 년 월 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직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 ○ 시·도

145mm×90mm[백상지(150g/㎡)]

(제1쪽)

참 고 사 항

1. 이 수첩은 발주자는 물론 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이 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제7호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이 취소되고 제74조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이 수첩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 수첩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145mm×90mm[백상지(150g/㎡)]

(제2쪽)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자본금	(천원)
영업소 소재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직인	

145mm×90mm[백상지(80g/㎡)]

▲시공능력 평가사항

(제3쪽)

평가일	평가금액 (천원)	평가액 적용기간	확인	평가일	평가금액 (천원)	평가액 적용기간	확인

145mm×90mm[백상지(80g/㎡)]

▲정보통신기술자 사항

(제4쪽~제11쪽)

성명	자격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또는 경력수첩 번호)	자격유효기간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만 해당함)	교육이수 연월일	입사		퇴사	
				연월일	확인	연월일	확인

145mm×90mm[백상지(80g/㎡)]

▲변경사항

(제12쪽~제13쪽)

변경연월일	변경항목	변경된 내용	확인

145mm×90mm[백상지(80g/㎡)]

▲행정처분사항

(제14쪽)

연월일	내용	사유	확인

145mm×90mm[백상지(150g/㎡)]

0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구 분	세부 확인사항	비고
처 분 청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주관부서	행정정보과(063-280-3133)	
접 수 처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처리기한	접수일로부터 10일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첨부1 서식) 1부 ②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국내 주재 해당국 영사가 확인한 확인서 제출) ③ 신청일부터 45일 이내의 기간 중 신청인이 선택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 1부 ④ 정보통신기술자 명단 1부와 경력 수첩 사본 1부 ⑤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 예치 또는 출자 확인서 1부 	
심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청인(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이 적정한지 여부 ② 법인 임원 수 및 성명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치 여부 ③ 신청인,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이 법 제16조 각호1(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④ 정보통신공사업등록자 행정처분기록부를 확인하여 법 제16조의 각호 1(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⑤ 기업진단보고서 및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되어 있는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재산)이 등록기준에 합당한지 여부 ⑥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원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⑦ 2중 취업 여부 ⑧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1개 가입 여부 ⑨ 정보통신기술자 등이 항상 이용 가능하고 사무 장비를 갖추 수 있는 사무실 확보 여부 ⑩ 상호, 영업소재지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⑪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자본 금액의 100분의 10이상 예치 또는 출자금액 적합 여부 	
근거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시행령 제16조	

처 리 절 차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